

# 2020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 단체(자)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작가의 미술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 
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(자)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1. 공모개요 ■ 공모명: 2020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 참여단체(자) 공모

### ☞ ‘작가미술장터’란?

2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·실험적 성격의 미술장터

### ■ 추진목적

- 직거래 미술장터를 개설하여 미술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개척 지원  
(\* 작품판매 수익금 전액 해당 작가 지급)
-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 유도
- 미술시장 관계자(화랑, 미술관 등)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시장체계로 진입 지원 강화
- 전년도 우수장터가 서울부산 외 지역에서 개설할 경우 연속 지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장터 활성화

## 2. 공모내용 ■ 지원대상 사업기간: 2020. 6. ~ 10. (\* 6~8월, 9~10월 기간 중 택일)

- \* 단, 장터 운영 기간은 주말 포함 5일 이상 / 설치·철수 기간 제외
- \* 서울부산 지역과 서울부산 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 가능하나, 한 지역에서 주말 포함 3일 이상 장터 운영 필수

### ■ 신청자격: 본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미술장터 행사를 기획·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획자

- \*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
- \* 화랑 및 미술관 지원 신청 불가
- \* 미술품 매매, 미술품 대여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자체 공간에서 장터 개설 불가 (타 공간 섭외 시 지원가능)

신청단체(자) 의무사항	* 장터 개설 시 카드 결제 및 무이자 할부 의무화 * 장터기간 중 참여자 및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후 제출
지원 불가사항	* 화랑, 아트페어 등 타 마켓에서 전시했던 동일 작품 및 연작(시리즈) 출품 불가 *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 출품 불가 *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지원 불가

---

■ **지원대상:** 민간단체(자)가 주관하여 기획·운영하고자 하는 중·소규모 미술장터

- ① 기획자 선임 필수 (\* 단, 지원 단체의 대표가 기획자인 경우는 제외)
- ② 중저가 미술품 구성 (\* 200만원 이하, 평균 30~50만원)
  - \*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대형평면·입체·설치작품 가격 상한선 예외 (※ 단, 이 경우라도 센터와 사전협의 필수. 총 원화 출품작 수의 10% 초과 불가. 교부신청 시 대형평면·입체·설치작품을 포함, 60% 이상 확정된 출품작품 리스트 제출 및 사업종료 후 최종 출품작품 리스트 제출 필수)
  - \* 원화와 함께 에디션(판화, 사진 등) 작품, 아트상품 판매 가능
- ③ 참여작가의 30% 이상, 개인전 1회(학위청구전 제외) 이상 작가로 구성
- ④ **작가·미술시장 관계자(미술관·화랑 등)와의 네트워킹(초대) 프로그램 기획·운영 필수(\* 2개 이상)**
  - \* 프로그램별 3인 이상 미술시장 관계자 참여 필수 (교부신청 시 초청 관계자 리스트 제출)

☞ ‘작가·미술시장 관계자(미술관·화랑 등) 네트워킹(초대) 프로그램’이란?

참여작가-미술시장 관계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술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를 초대하여 리셉션, 쇼케이스,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작가를 소개하고 장터를 프로모션 하는 자리  
(\*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제외)

■ **지원내용**

- ① 미술장터 및 부대행사에 기획·개설·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
- ② 장터별 대표작품은 센터 이름으로 (정부)미술은행 작품구입 대상 추천
- ③ ‘올해의 우수 장터’ 선정: 차기년도 서울·부산 외 지역에서 장터 개설 시 연속 지원
- ④ 신진작가(화랑·아트페어 특별전) 전시 지원 공모에 장터 참여작가가 포함 시 우선 선발  
(\* ‘미술공유서비스’와 연계)

■ **지원유형 및 규모:** 과거 유사사업의 성과, 지원신청 사업내용 및 규모, 장터 공간 크기,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심의 후 차등지원

〈공모사업 구성(안)〉

공모유형		지원규모	
[공모1]	서울·부산 장터	5개소 내외	25백만원 ~ 5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
[공모2] 그 외 장터	[2-1] 신규 [2-2] 전년도 우수장터	10개소 내외	30백만원 ~ 7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

※ 공모 1, 2 유형 중복 지원 불가

※ 사업장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서울·부산 지역과 서울·부산 외 지역에서 열릴 경우 [공모2]로 지원 가능

(\* 이 경우 서울·부산 외 지역에서 주말 포함 3일 이상 운영 필수)

※ 연속 3년('17~'19년) 서울·부산 지역에서 지원·선정된 장터는 [공모2]로만 지원 가능

※ 전년도 우수장터는 [공모2] 유형 지원 시 사업 타당성, 예산 적절성 등 행정 검토 후 연속 지원

※ 상기 공모유형별 지원규모(예산안)는 변동될 수 있음

### 〈공간크기별 지원규모 예시(안)〉

[공모 1] 서울·부산 장터		[공모 2] 그 외 장터	
공간크기	지원규모(안)	공간크기	지원규모(안)
100평 미만	25백만원~30백만원 미만	100평 미만	30백만원~40백만원 미만
100평~300평 미만	30백만원~40백만원 미만	100평~300평 미만	40백만원~50백만원 미만
300평 이상	40백만원~50백만원	300평 이상	50백만원~70백만원

※ 상기 공간크기별 지원규모는 가이드(안)으로 과거 유사사업 성과, 사업내용,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■ 심의 시 우대사항

- 미술시장 관계자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한 미술장터
- 관객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·마케팅 전략이 우수한 단체
- 기존 미술 시장과 다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장터개설 기획이 엿보이는 단체
- 대중에게 생소한 장르를 마켓화 하는 단체
-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단체의 경우 사업성과(예: 판매실적 등)가 우수한 단체
- 과거 유사사업 1회 이상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우대
- \* 전년도 동일사업 추진단체의 경우 판매성과 반영 예정

#### ■ 주요사항

<b>지원 항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미술장터 및 부대행사 기획·개설·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</b> 기획자 및 비상근 운영인력 인건비, 공간구성비, 프로그램 운영비, 작품포장 및 운송비, 홍보비,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등 ※ 단, <b>미술장터 공간 확보 이후 교부신청 가능</b> ※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화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<b>중복 수령 불가</b> ※ 그 외 지자체·지역문화재단·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</li> </ul>
<b>지원 불가 항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</b> 상근직원(대표 포함)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</li> <li>○ <b>단체운영 목적의 기본적 경비</b>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</li> <li>○ <b>부대비용</b>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(* 단, 행사 케이터링은 행사대행용역비로 집행 가능)</li> <li>○ <b>행사 담사비 등 준비비용</b>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비 등</li> <li>○ <b>기타 사항</b>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</li> </ul>

지원 자격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○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</li> <li>○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·시행령」, 「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」 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</li> <li>○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</li> <li>○ 학교 단위의 출업작품전 등</li> </ul>
선정 단체 의무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술장터 기획·개설·운영</li> <li>○ 장터 개설 시 카드 결제 및 무이자 할부 의무화</li> <li>○ 선정단체(자) 대상 사전 워크숍·맞춤형강의·결과공유회 참석 필수</li> <li>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</li> <li>○ 관람객용 &lt;장터 리플렛&gt;, &lt;도록비평집&gt; 및 홍보 기념품 제작 참여</li> <li>○ 장터 공식 SNS 플랫폼 가입 및 운영 참여</li> <li>○ 센터와 사전 협의 후 홍보물 제작 필수</li> <li>○ 모든 홍보/인쇄물에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CI, 작가미술장터 BI 등 센터가 지정하는 후원 표기 필수</li> <li>○ 장터기간 중 참여자 및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후 제출</li> <li>○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* 및 정산보고서** 제출</li> <li>○ e나라도움 상 정산·실적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(* 회계검사 수수료는 &lt;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&gt;을 참고하여 보조금 예산 안에서 지출 가능)</p>

#### 4. 공모신청

기간 및  
접수방법

■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0. 4. 2.(목) 17:00 마감

※ 2020년 4월 2일(목) 17:00 까지 「e나라도움」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7: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

■ 접수방법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「e나라도움(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」을 통해 신청

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: 1670-9595

※ e나라도움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
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
■ 제출서류 및 방법

no	제출서류	제출방법
1	[필수]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자출예산서 각 1부씩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
2	[필수] 지원신청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
3	증빙서류 ① [필수] 단체/개인 증빙서류 1부 * 사업자등록증 사본 (jpg 또는 pdf 파일) ② [선택] 과거 유사사업 실적 증명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 ※ 선정단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 시, 참여작가 이력 증명(*필수사항)
4	[선택] 기타자료 *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자료 제출 가능 (예: 공모사업과 유사한 기획사례가 담긴 포트폴리오)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첨부 제출
5	PT 자료	서류심의 이후, PT심의 대상단체(자)에 한하여 제출

※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

## 5. 심의일정 및 ■ 심의방법: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PT심의

### 심의기준

#### ■ 심의일정

구분	일정	방법
접수기간	공고일 ~ 2020. 4. 2.(목) 17:00	e-나라도움 시스템 접수
서류·PT심의 및 발표	2020년 4월 2주 ~ 4월 4주	전문가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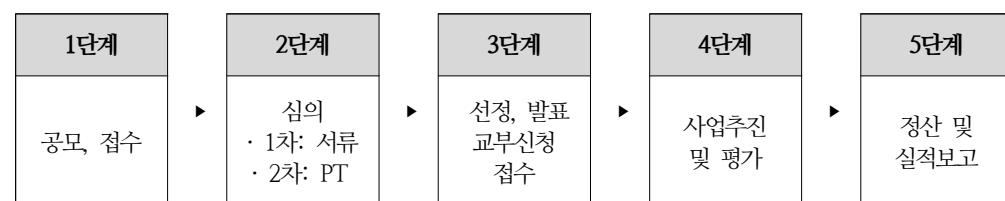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결과발표는 e나라도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(선정단체(자)에게 개별 연락)

#### ■ 심의기준

영역	심의지표	착안사항	배점
계획 단계 (30)	사업계획의 구체성/ 타당성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목적이 지원사업 목적(취지)에 부합하는가?</li> <li>○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?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내용이 합리적이며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</li> <li>-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,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내용 전략이 참신성, 차별성, 다양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는가?</li> <li>○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?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예산 대비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은 적절한가?</li> <li>- 세부 예산 편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워져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/ul>	30
집행 단계 (50)	신청자의 전문성/ 활동실적 (10) 부대 프로그램 및 미술품 판매계획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신청 주체가 보여 온 이전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,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?</li> <li>○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한 업무 배분 및 인력이 확보되었는가?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대 프로그램 계획이 구체적이고 장터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는가?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 간의 네트워킹 전략이 구체적인가?</li> <li>- 관객개발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모객 전략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</li> </ul> </li> <li>○ 미술품 판매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히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?</li> <li>○ 사업 홍보 ·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?</li> </ul>	50
성과 단계 (20)	사업성과 기대도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계획에서 작가 미술품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여도와 국민 미술문화 향유 및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?</li> <li>○ 향후 자생적 운영 가능성 및 연속성이 있는가?</li> </ul>	20
총 계			100

## 6. 추진절차



## 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\*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- 교부금 수령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(\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  
※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 내에서만 가능  
※ 교부 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가능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 
※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신청 예산 내 ‘회계검사 수수료’ 책정 필수  
※ 2020년 「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」 사업의 경우, 자부담은 필수 아님  
**(단,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에 한해 단체에서 직접 부담)**
- 지원신청 내용(과기 유사 기획사례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
※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 
(\* 예: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,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
### 〈e나라도움 신청 및 접수관련 유의사항〉

- 해당 사업은 신청서 접수, 사업자 선정, 예산 교부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<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‘e나라도움’>을 통해 진행됨
-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에 따른 오류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 바람  
(마감 후 사업신청서 제출 불가)
  -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시 ‘e나라도움 시스템’에서 온라인 검증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어려운 점 유의 바람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운영·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함
- 지원내용 문의 외 ‘e나라도움 시스템’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을 ‘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’ 및 시스템 내 [묻고 답하기], [오류신고] 등을 이용하기 바람

### 〈국고보조금 지침 개정〉

※ 〈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〉(개정, 2018.03.30.)에 따라 성폭력 관련자(단체) 지원 대상 제외 조항이 신설됨

- 제7조제4항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성폭력범죄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
- 제8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

## 8. 지원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

02-2098-2927/2931 | [vam@gokams.or.kr](mailto:vam@gokams.or.kr)